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재가복지센터의 운영규정 내용에 명시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계약목적

1) 센터와 수급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수용한다.

3.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5)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6) 폭행 · 욕설 ·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1)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무료

2024년도 노인장기 요양급여비용

등급별 월 한도액 인상률	2023년 월 한도액					비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5% 일반 9.0% 감경 6.0% 감경 0%기초수급권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2024년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등급별 본인 부담금 인상률	2023년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수가	일반 (15%)	경감 (9%)	경감 (6%)	구분	수가	일반 (15%)	경감 (9%)	경감 (6%)
	30분	16,190	2,429	1,457	971	150분	46,970	7,046	4,227	2,818
	60분	23,480	3,522	2,113	1,408	180분	52,880	7,932	4,759	3,173
	90분	31,650	4,748	2,849	1,899	210분	58,930	8,840	5,304	3,536
	120분	40,280	6,042	3,625	2,417	240분	65,000	9,750	5,850	3,900

등급별 본인 부담금 인상률	2024년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수가	일반 (15%)	경감 (9%)	경감 (6%)	구분	수가	일반 (15%)	경감 (9%)	경감 (6%)
	30분	16,630	2,495	1,497	998	150분	48,250	7,238	4,343	2,896
	60분	24,120	3,618	2,171	1,447	180분	54,320	8,148	4,889	3,259
	90분	32,510	4,877	2,926	1,951	210분	60,530	9,080	5,448	3,632
	120분	41,380	6,207	3,724	2,483	240분	66,770	10,016	6,009	4,006

2025년도 노인장기 요양급여비용

등급별 월 한도액 인상률	2024년 월 한도액					비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5% 일반 9.0% 감경 6.0% 감경 0%기초수급권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2025년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등급별 본인 부담금 인상률	2024년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수가	일반 (15%)	경감 (9%)	경감 (6%)	구분	수가	일반 (15%)	경감 (9%)	경감 (6%)
	30분	16,630	2,495	1,497	998	150분	48,250	7,238	4,343	2,896
	60분	24,120	3,618	2,171	1,447	180분	54,320	8,148	4,889	3,259
	90분	32,510	4,877	2,926	1,951	210분	60,530	9,080	5,448	3,632
	120분	41,380	6,207	3,724	2,483	240분	66,770	10,016	6,009	4,006

등급별 본인 부담금 인상률	2025년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수가	일반 (15%)	경감 (9%)	경감 (6%)	구분	수가	일반 (15%)	경감 (9%)	경감 (6%)
	30분	19,940	2,541	1,795	1,196	150분	49,160	7,374	4,424	2,950
	60분	24,580	3,687	2,212	1,475	180분	55,350	8,303	4,982	3,321
	90분	33,120	2,981	2,981	1,987	210분	61,670	9,251	5,550	3,700
	120분	42,160	3,794	3,794	2,530	240분	68,030	10,205	6,123	4,082

2026년도 노인장기 요양급여비용

등급별 월 한도액 인상율	2025년 월 한도액					비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5% 일반 9.0% 감경 6.0% 감경 0%기초수급권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2026년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등급별 본인부담금 인상율	2025년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수가	일반 (15%)	경감 (9%)	경감 (6%)	구분	수가	일반 (15%)	경감 (9%)	경감 (6%)
	30분	16,940	2,991	1,524	1,016	150분	49,160	7,374	4,424	2,950
	60분	24,580	3,687	2,212	1,475	180분	55,350	8,303	4,982	3,321
	90분	33,120	4,968	2,981	1,987	210분	61,670	9,251	5,550	3,700
	120분	42,160	6,324	3,794	2,530	240분	68,030	10,205	6,123	4,082

등급별 본인부담금 인상율	2026년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수가	일반 (15%)	경감 (9%)	경감 (6%)	구분	수가	일반 (15%)	경감 (9%)	경감 (6%)
	30분	17,450	2,617	1,570	1,047	150분	50,640	7,596	4,557	3,038
	60분	25,320	3,798	2,278	1,519	180분	57,020	8,553	5,131	3,421
	90분	34,120	5,118	3,070	2,047	210분	63,530	9,529	5,717	3,811
	120분	43,430	6,515	3,908	2,605	240분	70,080	10,512	6,307	4,204

2)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유선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2) 서비스 내용 및 비용의 부담

① 서비스 내용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 활동, 개인 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 증진
-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 개인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의사소통 도움 등
- 기타: 행동 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3)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본인부담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우리은행 1005-903-753002 우리재가복지센터 통장으로 매월 10일까지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인부담금 안내는 공단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문자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